

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3-41호
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'13. 7. 11. ~ 7. 18. 기간 중에 내린 집중 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우체국금융고객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8월 1일

우정사업본부장

1. 지원대상 : 5개 시·군 특별재난 선포지역

※ 경기도 가평군, 강원도 춘천시, 홍천군, 평창군, 인제군

2. 지원기간 : '13. 8. 1. ~ '14. 1. 31.(6개월)

3. 지원내용

가. 우체국예금 취급수수료 면제

- 온라인송금 수수료 면제(타행환 제외)
- 통장재발행 수수료 면제

나.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 유예

- 유예기간 : '13. 8. 1. ~ '14. 1. 31.
- 유예기간 경과 후 납입방법 : '14. 2월 ~ '14. 7월 중 유예 받은 보험료(환급금 대출이자)를 분할 또는 일시 납입

다. 사고보험금 접수 시 신속 지급

- 접수관서는 접수사실을 본부 및 우체국금융개발원에 즉시 보고
- 본부 및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

4. 접수방법

가. 우체국보험 고객

- 재해증명서로 집중호우 피해지역 보험계약자임을 확인한 후 보험료(환급금대출이자) 납입유예 신청서를 접수

나. 구비서류

- 우체국예금 고객
 - 피해지역 우체국장 피해사실 확인서류 또는 구청, 읍·면·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
- 우체국보험 고객
 - 보험료(환급금대출이자) 납입유예 신청서
 - 신분증 및 피해지역 우체국장 피해사실 확인서류 또는 구청, 읍·면·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

【붙임】

보험료(환급금대출이자) 납입유예 신청서

1. 계약내용

계약번호	계약자	상품명	보험료(대출이자)	최종 납입년월/횟수

2. 약정내용

제1조 2014년 1월 이후 해당 보험료(환급금 대출이자)는 정상적으로 납입합니다.

제2조 2014년 1월까지의 납입 유예 보험료(환급금 대출이자)는 아래와 같이 납입합니다.

유예 보험료 (대출이자)납입 월	2014.2	2014.3	2014.4	2014.5	2014.6	2014.7
납입횟수/금액						

제3조(계약의 효력) 2014년 2월부터는 해당 월 보험료(대출이자)와 분할 납입으로 약정한 유예보험료를 상기 납입 월에 납입하며, 만약 보험료(환급금 대출이자)를 약정한 납입 월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약정한 납입 월의 익월 1일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.

제4조(납입방법) 납입기일 까지 우체국 직원 및 우체국 FC를 통해 납입하거나,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본인은 우체국과의 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상기의 각 조항을 확인하며,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이해 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13년 월 일

신 청 인	(인)	주민등록번호	-
주 소		전화번호	() -
피해내용			

OO 우체국장 귀하

접수자	직·성명	접수인	확인자	우체국장(인)